

2020년 6월 26일  
(2022년 10월 7일 갱신)  
출입국재류관리청

##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영주자 여러분께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영향으로 '재입국 허가' 또는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영주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방법으로 다시 입국(※1)하실 수 있으니 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십시오.

- ① 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, 또는 유효기간 내에 재입국하기 어려운 경우  
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서 재입국 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[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최장 1년간 입니다. ]

재입국 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새 유효기간 내에 일본에 재입국하여 주십시오. 연장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②의 방법으로 입국하여 주십시오.

- ②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(①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.)

[ '재입국 허가' 또는 '간소화된 재입국 허가'의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인 분이 대상입니다. ]

2023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의 일본국 대사관·총영사관에 '정주자' 사증(비자)을 신청해 주십시오.

사증(비자)이 발급되면 입국 시 일본 공항에서 '영주자'로 입국

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다.

※1 ① 및 ②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에 관해서는 아래의 외무성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.

[https://www.mofa.go.jp/about/emb\\_cons/mofaserv.html](https://www.mofa.go.jp/about/emb_cons/mofaserv.html) (외무성 웹사이트로 이  
[통합합니다.](#))

※2 본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분이 본 조치를 이용하지 않고 아래의 ① 또는 ②에 따라 '영주자'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했을 때는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영주 허가 신청을 해주시면 영주 허가 신청서, 제기서([별첨 참고 양식 1](#)), 기존의 재류 카드 사본(복사본)으로 심사합니다(필요에 따라 기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).

① 2023년 10월 31일까지 신청한 사증(비자)의 유효기간 내에 '영주자'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경우

② 사증(비자)을 소지하지 않고 2023년 10월 31일까지 '영주자' 이외의 재류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경우

다만, 일본에 입국한 후 영주 허가를 받으면 1명당 8,000엔의 수수료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영주 허가 신청을 하시면 통상의 영주 허가 신청과 같은 입증 서류가 필요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영주 허가를 받음으로써 중장기 재류자가 되시는 분은 영주 허가 후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 주거지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